

'20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(무료) 안내

'18년 5월 29일부터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, 1시간 이상 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” 을 실시해야 합니다.

◆ 사업목적

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여 사업장의 부담 해소 및 교육 의무 이행을 뒷받침함

◆ 지원대상

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(해당 사업장(기관)에 소속된 사업주 및 근로자)

◆ 지원내용

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위탁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사업장에 지원하여,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(무료)

※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, 강사 지원을 통한 교육실시에 따른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음

◆ 신청방법

'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' 를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탁한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팩스, 이메일 등으로 제출

※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(edu.kead.or.kr)에서 '20년도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명단 확인 및 신청서 양식(별첨 참고) 다운로드 가능 [교육포털 접속>무료 교육지원>'강사지원사업 안내 및 수행기관 찾기' 메뉴 이용]

◆ 문의: 1588-1519 (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)



